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시장 분석형

No. 2022-124

품목 콜라겐 젤리(Collagen Jelly)

HS CODE 2106.90.9099

국가 싱가포르(Singpore)

KaTi 농식품수출정보

C.O.N.T.E.N.T.S

Ⅰ 시장 현황 및 전망 3

1. 시장 규모
2. 수출입 통계

Ⅱ 트렌드 10

1. 소비 트렌드

Ⅲ 유통 16

1. 유통구조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Ⅳ 통관 및 제도 26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라벨링
4. 위생요건

Ⅴ 시사점 54

1. 수출 확대 방안

I

시장 현황 및 전망

01 시장 규모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2021년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소매 판매액 기준 4억 5,8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323억 원)을 기록함.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4.9%를 기록함

- 건강에 대한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향후 5년간(2022-2026년) 건강보조식품은 연평균 성장률 5.7%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5억 9,87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5,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추이(2017-2026년)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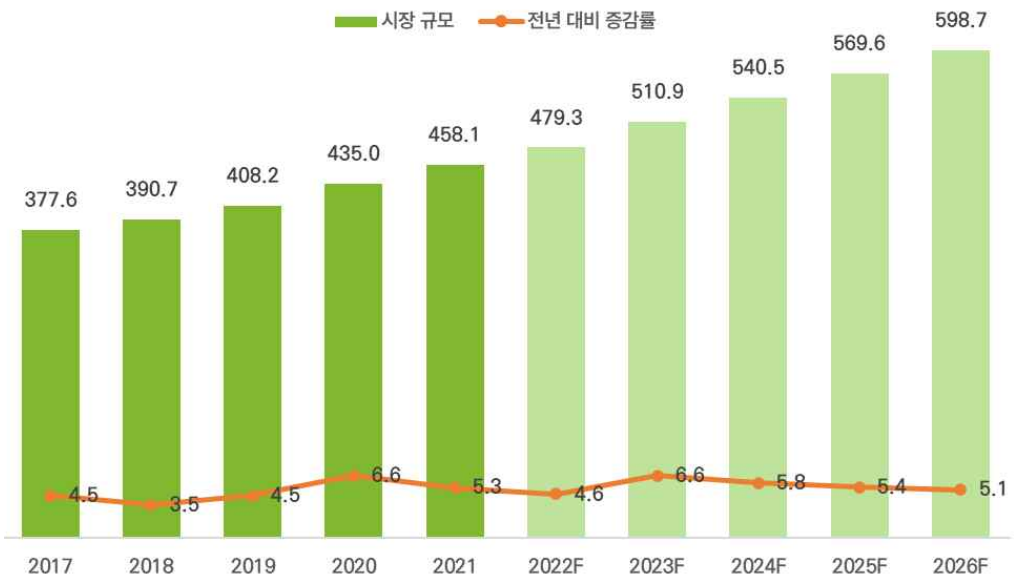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싱가포르 비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지원 기업의 제품은 콜라겐으로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에 속하여, 해당 시장 규모를 조사함

2021년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소매 판매액 기준 전년 대비 5.5% 증가한 2억 6,0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53억 원)를 기록함.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를 기록함

향후 5년간(2022-2026년)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판매액은 연평균 성장률 6.0%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3억 4,33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2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추이(2017-2026년)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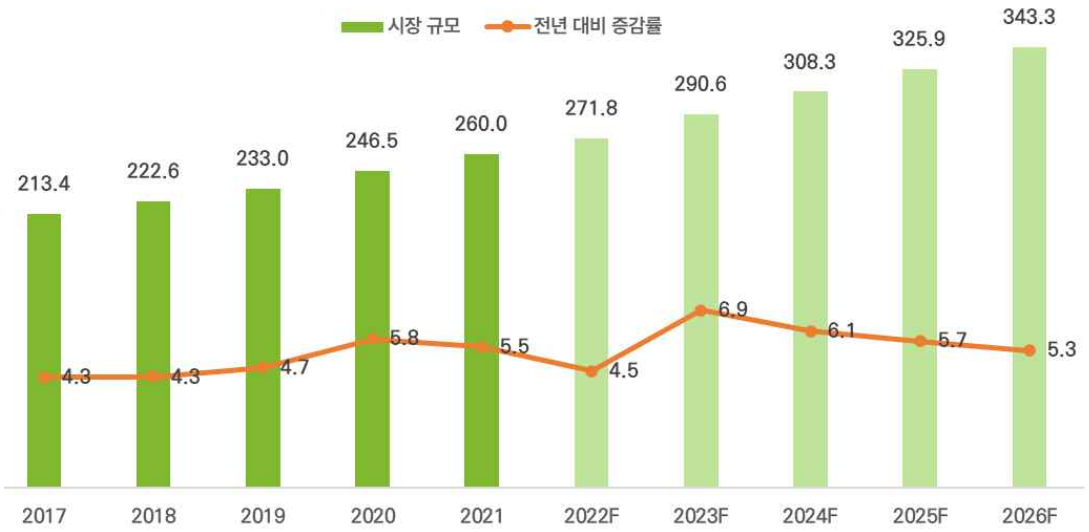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수출입 통계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HS CODE 2106.90
- 기타

HS CODE 2106.90.9099
- 기타

국가별 HS CODE
- 글로벌: 2106.90
- 싱가포르: 2106.90
- 한국: 2106.90.9099

글로벌 콜라겐 젤리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콜라겐 젤리(HS CODE 2106.90) 수입 규모는 553억 4,788만 7,000달러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0.6% 증가함

- 2021년 미국은 71억 5,717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약 12.9%를 차지함
- 이어서 중국(7.4%), 독일(4.1%), 한국(3.9%), 네덜란드(3.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3위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 규모의 약 1.4%를 차지함

표 1 글로벌 콜라겐 젤리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37,028,393	43,798,315	46,130,368	49,169,142	55,347,887	10.6
1	미국	2,305,658	5,263,280	5,826,461	6,386,648	7,157,170	32.7
2	중국	1,835,969	2,717,012	3,122,560	3,835,344	4,070,764	22.0
3	독일	1,648,789	1,766,190	1,773,936	2,024,275	2,272,753	8.4
4	한국	1,174,692	1,380,331	1,710,688	1,913,551	2,166,919	16.5
5	네덜란드	1,300,937	1,525,987	1,552,659	1,780,066	2,101,822	12.7
23	싱가포르	364,467	490,716	609,801	648,132	750,724	19.8
	기타	28,232,345	30,640,637	31,662,535	32,676,823	36,981,922	7.0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3 글로벌 콜라겐 젤리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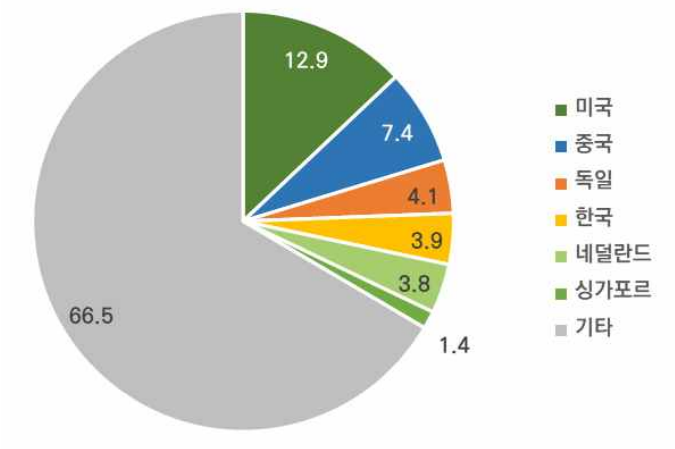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싱가포르 콜라겐 젤리 수입 규모

2021년 싱가포르의 콜라겐 젤리(HS CODE 2106.90) 국가별 수입 규모는 對인도네시아 수입액이 1억 7,435만 5,000달러로 전체 수입 규모의 23.2%를 차지함
- 그 외 미국(17.0%), 중국(13.2%), 말레이시아(11.0%), 스위스(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21년 對한국 수입 규모는 1,805만 1,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27.9%를 기록함

표 2 싱가포르 콜라겐 젤리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364,467	490,716	609,801	648,132	750,724	19.8
1	인도네시아	9,076	61,462	112,214	137,696	174,355	109.4
2	미국	105,289	118,124	129,546	122,345	127,948	5.0
3	중국	30,960	46,540	64,032	77,618	99,115	33.8
4	말레이시아	42,145	50,430	55,620	64,341	82,885	18.4
5	스위스	15,858	23,687	31,347	31,370	34,841	21.7
12	한국	6,749	7,365	11,604	15,907	18,051	27.9
	기타	154,390	183,108	205,438	198,855	213,529	8.4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4 싱가포르 콜라겐 젤리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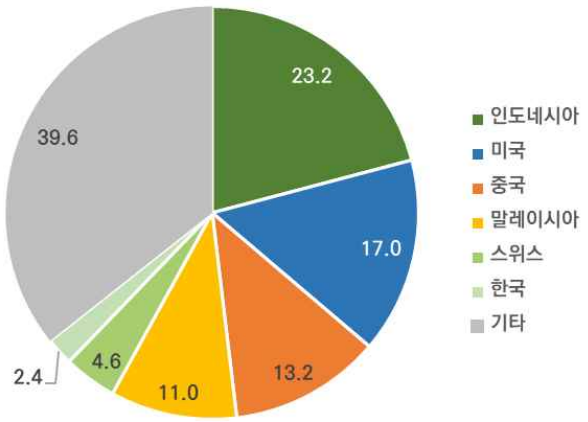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한국 콜라겐 젤리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콜라겐 젤리(HS CODE 2106.90.9099) 수출 규모는 5억 2,983만 5,000달러, 수출량은 13만 9,529톤을 기록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수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14.3%, 수출량은 연평균 성장률 -0.04%를 기록함

2021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콜라겐 젤리 수출 규모는 2,132만 6,000달러, 수출량은 1,066톤을 기록함

- 수출액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 37.3%를 기록함
- 수출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0.1%를 기록함

표 3 한국의 對글로벌 및 對싱가포르 콜라겐 젤리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對 글로벌	수출액	310,955	339,803	342,361	428,878	529,835	14.3
	(YoY)	4.0	9.3	0.8	25.3	23.5	-
	수출량	139,729	144,126	141,040	132,479	139,529	-0.04
	(YoY)	3.4	3.1	-2.1	-6.1	5.3	-
對 싱가포르	수출액	5,997	7,426	12,725	20,899	21,326	37.3
	(YoY)	-6.8	23.8	71.4	64.2	2.0	-
	수출량	372	493	687	1,030	1,066	30.1
	(YoY)	37.3	32.4	39.5	49.9	3.5	-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II

트렌드

01 소비 트렌드

싱가포르 미용 관련 건강보조식품 트렌드

싱가포르 여성 소비자들의 미용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겐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여성 소비자들은 미용, 다이어트, 소화 기능 개선 기능을 강조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음

미용 관련 제품은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전반적 건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반적 건강을 기능으로 강조하는 제품이 전체 시장의 37.5%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미용(9.3%), 관절 건강(7.1%), 뼈 건강(6.2%), 소화 건강(4.3%), 면역 시스템(3.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5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시장점유율(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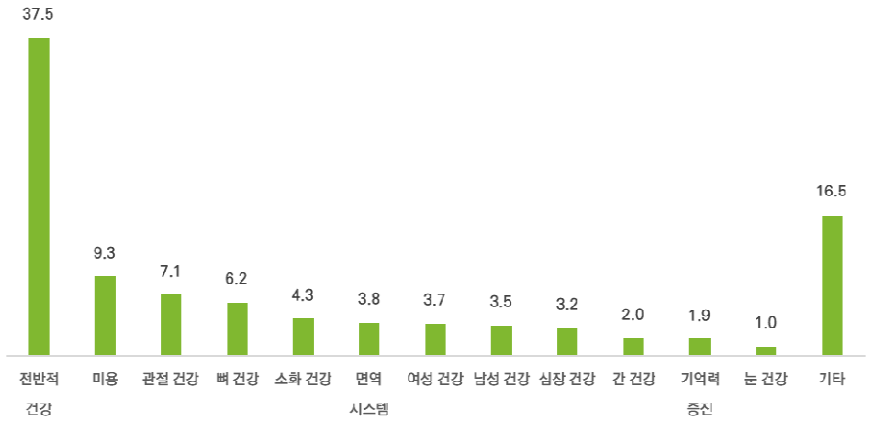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싱가포르 여성 소비자들은 콜라겐 선택 시 성분 및 원산지를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음

– 제품 성분 중 화학 첨가물 등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연산 어류에서 추출한 성분 등 신뢰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시중에 다양한 국가에서 출시한 제품이 있으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으며, 일본 브랜드 시세이도의 액체 타입 제품이 인기가 높음

싱가포르의 주요 드럭스토어 Guardian의 온라인 몰에서는 다양한 콜라겐 제품을 판매 중임
- 콜라겐 제품은 캡슐 및 액체 타입 제품이 대부분이며, 피부 미용을 주요 기능으로 강조함

표 4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콜라겐 제품

제품명		제품 특징
	Kinohimitsu Collagen Diamond Drink	- 콜라겐 펩타이드 5,300mg 함유 - 모공 수축 및 안색 개선 효과
	Blackmores Ultimate Radiant Skin	- 입자가 작은 마린 콜라겐으로 쉽게 몸에 흡수됨 - 모공 수축 및 주름 개선 효과 - 할랄 인증 제품

자료: Guardian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소비 트렌드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은 크게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과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은 전체 시장의 43.3%,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은 56.7%를 차지함
- 싱가포르 의료 체계에서는 전통 한약이 보조제로서 자주 사용되어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그림 6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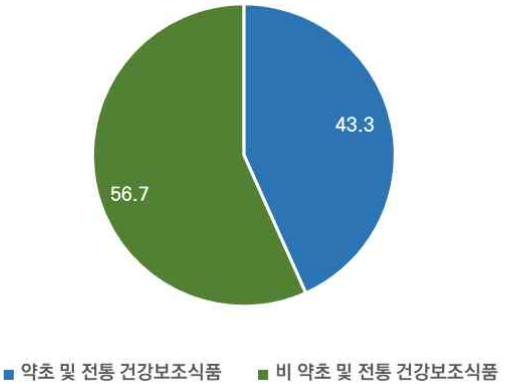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콜라겐 젤리의 상위 시장인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ONI Global이 전체 시장의 5.2%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함

- 이어서 Blackmores가 3.8%, Kordel's가 3.6%, Nu Skin Enterprises Singapore가 2.6%, USANA Health Sciences Singapore와 Ocean Healthcare가 각각 2.5% 순으로 조사됨

그림 7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기업별 시장점유율(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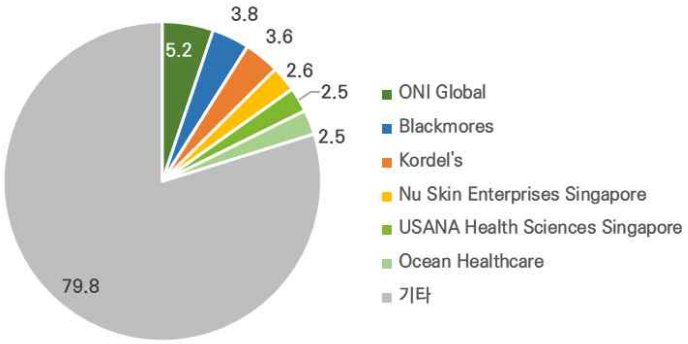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ONI Global사의 GNC가 전체 시장의 5.2%를 차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함

- 이어서 Blackmores사의 Blackmores가 3.8%, Kordel's사의 Kordel's가 3.6%, Nu Skin Enterprises Singapore사의 Pharmanex가 2.6%, USANA Health Science Singapore사의 USANA가 2.5%를 차지함

그림 8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별 시장점유율(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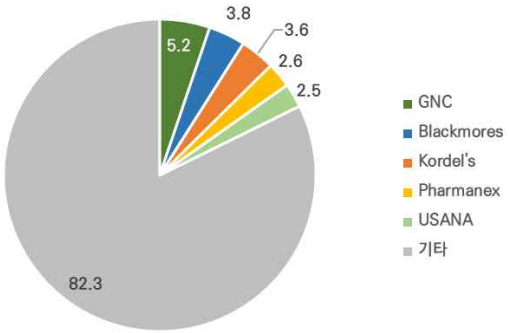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빅데이터 분석

1. 개요

싱가포르 내 웹트래픽 수가 높은 아마존에서 콜라겐젤리(collagen jelly)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순임
- 수집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 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 건수는 제품 86건, 소비자 반응 2,266건임

2.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콜라겐젤리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제품과 직접적인 단어의 경우 제외함. 빈도는 피부 126건, 머리카락 73건, 구미 52건 순으로 높았으며, 다른 주요 단어들로는 건강, 미용 손톱, 비타민, 보충제 등이 출현함. 콜라겐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다량 검색됨

표 5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순위	출현단어	출현빈도
1	피부	126
2	머리카락	73
3	구미	52
4	건강	50
5	미용	47
6	손톱	45
7	비타민	35
8	보충제	30

그림 9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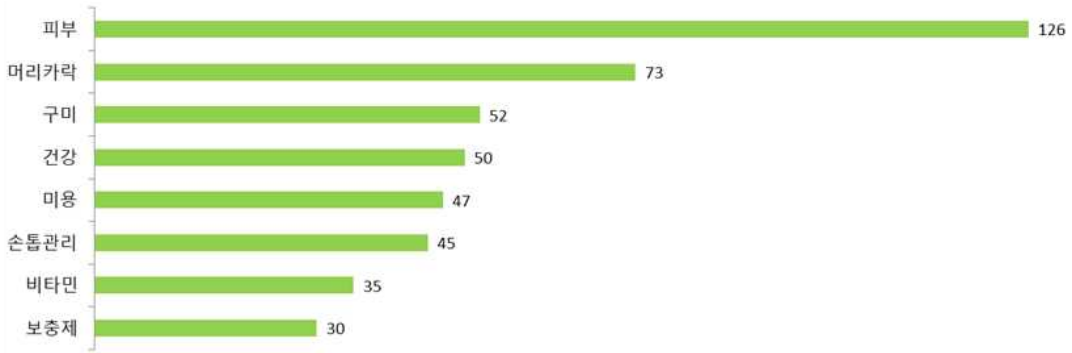

3. 동시출현단어 분석

연관단어 출현 빈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콜라겐젤리 소개 시 제품 섭취와 연관된 다양한 신체(머리카락, 피부, 손톱, 주름, 관절 등) 키워드가 검색됨. 이 키워드는 대부분 미용과 관련 있는 키워드로 제품의 주요 소비층은 높은 확률로 여성일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음. 또한 콜라겐과 관련한 영양성분도 일부 도출됨

표 6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 빈도

순위	연관단어	특징
1	머리카락 손톱	21
2	바이오틴 비타민	8
3	피부 관절	6
4	수분 탄성	6
5	프로틴 몸	4
6	직장 여행	4
7	뼈 건강	4
8	외모 주름	4
9	타르트 체리	3
10	피부 미용	3

4. 리뷰 출현 단어 분석

콜라겐젤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리뷰에선 앞서 분석된 키워드처럼 미용과 관련한 키워드(머리카락, 손톱, 피부케어 등)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었으며, 무릎과 관절 통증에 대한 리뷰 키워드도 검색됨.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키워드도 등장했음

표 7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순위
1	머리카락 손톱	83
2	아침 커피	39
3	부작용	28
4	무릎 통증	22
5	얼굴 피부	16
6	관절 통증	12
7	피부 케어	12
8	오렌지 주스	10

III

유통

01 유통구조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유통구조

지원 기업의 품목 콜라겐 젤리의 상위 카테고리인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채널을 분석함

Euromonitor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은 드럭스토어, 직접 판매,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소형 식료품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은 주로 드럭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드럭스토어의 유통 비중은 전체 유통채널의 63.6%를 차지함

- 이어서 직접 판매(20.8%), 하이퍼/슈퍼마켓(6.8%), 온라인 쇼핑몰(5.7%), 소형 식료품점(1.3%) 순임

그림 10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유통채널별 비중(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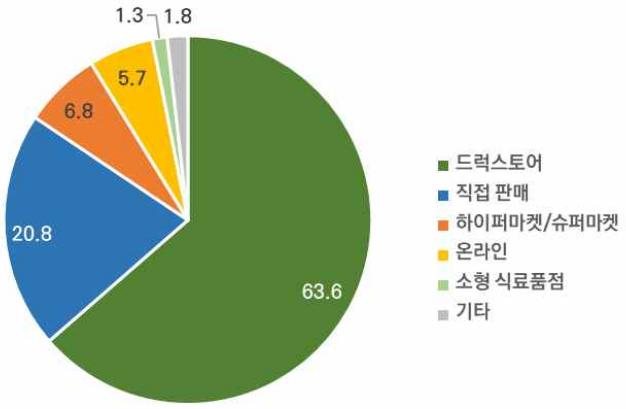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유통채널

1. 드럭스토어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Guardian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Dairy Farm International로, 2020년 기준 전체 드럭스토어 시장의 21.1%를 차지함

- 이어서 Watsons를 운영하는 Watson's Personal Care Stores가 19.8%, Unity를 보유하고 있는 NTUC Healthcare가 6.5%, Sephora Singapore가 4.7%, Hockhua Group이 3.3%를 차지함
- 코로나19로 외출 빈도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하던 제품을 하이퍼/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함께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이에 따라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Dairy Farm International에서는 최근 슈퍼마켓 브랜드 Giant 내에 Guardian 매장을 개설함

표 8 싱가포르 주요 드럭스토어 업체별 시장점유율(2020년)

(단위: %)

기업명	시장점유율	주요 브랜드
Dairy Farm International	21.1	Guardian
Watson's Personal Care Stores	19.8	Watsons
NTUC Healthcare	6.5	Unity
Sephora Singapore	4.7	Sephora
Hockhua Group	3.3	Hockhua Tonic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 하이퍼/슈퍼마켓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퍼/슈퍼마켓 기업은 NTUC FairPrice로,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47.9%를 차지함

- 이어서 Dairy Farm International이 22.3%, Sheng Siong Supermarket이 20.8%, Prime Supermarket이 2.9%, U Stars가 2.4%의 비중을 차지함
- NTUC Fair Price 산하 브랜드로는 FairPrice, FairPrice Finest, Fairprice Xtra가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식료품 구매를 더욱 신중하게 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에서 가격 할인 및 동결 정책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표 9 싱가포르 주요 하이퍼/슈퍼마켓 업체별 시장점유율(2020년)

(단위: %)

기업명	시장점유율	주요 브랜드
NTUC FairPrice	47.9	Fair Price, FairPrice Finest, Fair Price Xtra
Dairy Farm International	22.3	Giant, Cold Storage, Market Place by Jasons
Sheng Siong Supermarket	20.8	Sheng Siong
Prime Supermarket	2.9	Prime
U Stars	2.4	U Stars Supermarket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3. 온라인 쇼핑몰

싱가포르 온라인 유통채널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은 Lazada, Amazon, Shopee임

- 그 밖의 온라인 쇼핑몰로는 Gmarket과 eBay의 합작회사인 Giosis가 운영하는 Qoo10 등이 있음
-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약 53% 증가함.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표 10 싱가포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점유율(2020년)

기업명	매출액	주요 브랜드
Alibaba	약 48억 5,181만 달러	Lazada
Amazon	약 9,280만 달러	Amazon
Sea	약 3,730만 달러	Shopee

자료: Statista, SmilarWeb, EcommerceDB

주요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업체: (1) 드럭스토어

1. 가디언(Guardian)

guardian healthy beauty		개요 및 주요 이슈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5개국에서 매장 운영 중 – 자사 홈페이지 통해 뷰티 및 건강 관련 정보 제공 – 다양한 자체 제작 상품 판매 중 – 20–30대 여성이 주요 타깃 고객임
유통업체명	Guardian		
홈페이지	www.guardian.com.sg	본사 소재지	21 Tampines North Drive 2 #03–01, Singapore
입점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 페이지 상단 메뉴의 Contact us 클릭
– 필요 정보 기입 후 제출
– 기입 정보: 담당자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문의 내용

2)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
–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가격 등
–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3) 문의사항 연락처
– 전화번호: +62–6981–8000
– 이메일: customerservice@guardian.com.sg

2. 왓슨스(Watsons)

		개요 및 주요 이슈	– 1841년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중국, 터키, 러시아 등 25개국에서 약 1만 5,000개의 매장 운영 중 – 매장에서는 약 6,000개, 온라인몰에서는 약 8,000개 제품 판매 중 – 온라인몰 주문 후 오프라인 매장 픽업 서비스 제공 중 – 타깃 소비자는 20–30대 여성임
유통업체명	Watsons		
홈페이지	www.watsons.com.sg	본사 소재지	300 Beach Road, The Concourse, #39–01/04, Kampong Glam, Singapore
입점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 A.S.Watson 기업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Suppliers & Partners'의 'Becoming A.S. Watson Suppliers' 클릭하여 절차 확인
– Watsons 공급업체 포탈에서 'Apply here'를 클릭하여 필요 정보 기재

2) 필요 정보
– 공급자 정보: 회사명, 회사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기업정보, 사업자등록증, 설립연도, 주거래처, 제조시설 정보 등
–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브랜드 정보, 제품 이름, 제품 샘플 등
–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3) 문의사항 연락처
– 입점 관련 사항은 본사로 직접 문의
– 전화번호: +62–6337–3433
– 이메일: grouppr@aswatson.com

주요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업체: (2) 하이퍼/슈퍼마켓

1. 페어프라이스(FairPrice)

FairPrice		개요 및 주요 이슈	– 1973년 설립한 싱가포르 전국노동자연합 산하의 협동조합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유통 기업 – 2020년 Visa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매장 개점 – 사업자용 온라인 포털 별도 운영
유통업체명	FairPrice		
홈페이지	www.fairprice.com.sg	본사 소재지	No.1 Joo Koon Circle #13-01 FairPrice Hub Singapore 629117
입점 절차			

1) 공급자 포털을 통한 등록
- 홈페이지 주소: https://sp.fairprice.com.sg/home.action
- 공급자 포털 내 정보 기입 후 제출
- 포털 기입 정보: 기업명, 기업 주소, 영역별 담당자 연락처(경영, 재무, 물류 등)

2) 문의사항 연락처
- 전화번호: +65-6275-6073
- 이메일: fpsupport@pracbiz.com

주요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업체: (3) 온라인 쇼핑몰

1. Amazon Singapore

amazon.sg		개요 및 주요 이슈	– 2017년 싱가포르 시장 진출 – 수입 제품 및 싱가포르 현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 중 –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회원 프로그램 Prime을 선보임 – 싱가포르 거주자는 40달러 이상 주문 시 2–3일 내 무료 배송
유통업체명	Amazon Singapore		
홈페이지	www.amazon.sg	본사 소재지	1 Robinson Road, #17–00, Aia Tower, Singapore
입점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등록 및 문의
– 홈페이지 하단 'Sell on Amazon' 클릭 후 'Sell locally' 클릭
– 아마존 싱가포르 웹사이트 회원 가입 혹은 로그인

2) 등록 시 필요한 정보
– 공급자 정보: 회사명, 회사 홈페이지 주소, 국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등
–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 공급 제품 정보: UPC/EAN 보유 여부, 제품 종류, 예상 매출액, 판매 입고량 등

2. 쇼피(Shopee)

Shopee		개요 및 주요 이슈	– 2015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 –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를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 및 SNS에 특화된 플랫폼 제공 – 20–30대 여성 고객이 주요 타깃임 – 화장품, 유아용품, 패션,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함
유통업체명	Shopee	본사 소재지	Sea Limited 2 Science Park Drive, #03–01, Tower A Ascent, Singapore
연락처	+65–6727–5950	홈페이지	https://shopee.sg
입점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 홈페이지 왼쪽 상단 'Sell on Shopee' 클릭
– 하단의 'Sign up as a Shopee Mall Seller' 클릭

2) 등록 시 필요한 정보
– 공급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회사 홈페이지, 제품 카테고리, 브랜드 로고 등
– 싱가포르 사업 허가서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3) 문의사항 연락처
– 전화번호: +65–6206–6610

Ⅳ

통관 및 제도

01 통관 및 검역

한국 수출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수입신고 서류 준비	① 정식 수출신고: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1. 서류 구비
↓
2.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3. 수출신고
↓
4. 세관 심사
↓
5. 선(기)적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략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수출신고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세관 심사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싱가포르 통관 절차

개요	–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입규제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음.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음. 그리고 해상 및 항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경제자유구역(FTZ, Free Trade Zones)을 거쳐 반입될 수 있음 – 다만 정상가격(수출국 시장의 일반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싱가포르 내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계 반덤핑 관세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한편 싱가포르는 작은 영토로 인해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 안전성 검증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정책을 보이고 있음. 식품 수입 허가를 위해 사전에 승인이 되어 있는 국가와 철저한 샘플 분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서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수입 통관 절차도

1.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

2. 수입신고

⬇

3. 관세 납부

⬇

4. 검사 및 검역

⬇

5. 물품 반출

수입 통관 절차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 관세청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① 개요 –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보 변경 및 종료도 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에서 진행이 가능함 ② 필요 정보 및 서류 –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UEN: Unique Entity Number) – 싱가포르 법인의 CorpPass – 상품 기본 정보 및 HS Codes ③ 신청 절차 ㉠ 싱가포르 관세청에 무역업 계정 신청 시 일반적으로 1영업일 후에 승인 결과를 받음 ㉡ 무역업 계정 승인 후 Cargo Clearance Permit (CCP)를 받을 수 있음 ㉢ CCP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 수입면허 취득	① 개요 – 식품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분류를 사전에 확인 후 사전에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무역 라이선스 취득 또는 등록해야 함 ② 필요 정보 및 서류 – 싱가포르 관세청 무역업 신청 완료 – ACRA(싱가포르 기업청) 사업자 등록증(Business Profile) – 싱가포르 법인 이사의 CorpPass – Giro 신청서: 법인계좌 정보, 은행 서명권자 서명, 법인도장 ③ 신청 절차 ㉠ GoBusiness Licensining에서 수입 제품 항목에 맞는 라이선스 신청 및 비용 결제 ㉡ 수입부가세 및 Import Fees 자동 이체를 위해 Giro 신청서를 제출함. Giro를 신청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취득은 가능하지만 향후 수입 관련 세금 미납 발생 시 해당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상품 통관이 지연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것이 좋음 ㉢ 라이선스 취득에 1영업일이 소요되며 승인 익영업일부터 수입 통관이 가능함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 수입허가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수입업체 사전 등록 또는 면허 번호, 제품 및 HS 코드 준비 ② 기관 코드 확인(한국의 기관 코드는 KR99999) ③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수입 제품 코드(Product Code) 확인 ④ TradeNet을 통해 수입 허가 신청하고 해당 과정에서 받은 고유 참조번호(Unique Reference Number) 확인 ⑤ 필요한 경우 TradeNet을 통해 추가 서류(위생증명서, 실험보고서 등) 제출 ⑥ 싱가포르 관세청과 식품청의 승인 이후, 화물 통관 허가증(CCP, Cargo Clearance Permit)을 발급받음. 해당 허가증은 싱가포르 식품청 수입 허가증의 역할도 수행함 ⑦ 화물 통관 허가증 및 사본 인쇄하여 국경 검문소나 검역 등의 과정에서 사전에 구비 ⑧ 수입 식품 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입 수수료를 Giro 계정을 통해 납부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고 "TradeNet®"으로 EDI system을 통해 제출되어야 함. 컨테이너 화물(Containerised cargo)과 비컨테이너 화물(Conventional Cargo)로 구분되어 수입신고가 되며, 아래의 구비(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 컨테이너 번호를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 시에는 통관을 위해 유효한(valid) 허가 내용이 제출되어야 하며, 허가의 만기(expired) 또는 유효하지 않은(invalid) 허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기타 통관에 필요한 서류

관세 납부	관세는 관세 납부 대상(dutiable goods)에 한하여 납부하며,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함. 관세 대상 물품은 종가세(ad valorem) 또는 종량세(specific)가 적용됨 관세 등 조세는 inter-Bank GIRO(IBG)를 통해서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되어야 함
검사 및 검역	(1) 개요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은 검사 대상에 해당됨. 싱가포르 식품청은 품목별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 파악이 중요함. 식품 화물은 검사 대상이며, SFA에서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예약 없이 수행된 즉석 검사(ad hoc inspection)에 대하여는 결과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를 위해 SFA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1)]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3) 제출 서류 - 화물통관허가증(CCP: Cargo Clearance Permit) - 인보이스, 검역증명서 등 관련 문서 - 검사 대상 식품 화물
물품 반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서류(Paperless) 신고 및 신고 수리되어 반출됨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 반출이 허가됨

1) ifast.sfa.gov.sg/eserviceweb

02 인증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 등록 (필수)

1. 개요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싱가포르는 모든 식품을 수입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식품 수출이 가능함. 식품의 유형에 따라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식품과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 구분됨

기존 AVA(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농식품수의청)에서 수행하였으나 2019년 4월 식품 관리 체계를 통합하면서 싱가포르 식품청이 식품 안전 및 수입 식품 관리를 총괄함

2. 대상 품목

모든 수입식품으로서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신선란, 가공 식품 등을 포함한 식품 전반
- License(수입허가 대상): 육류, 수산물, 신선 과일, 채소류, 신선 식용 계란
- Registration(업체 등록 대상): 가공식품, 식기류

구분	심사 절차
육류	· 동물 및 조류의 전체 혹은 일부 · 냉장, 냉동 및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는 식육 가공품을 포함 (육류 함량 5% 이상인 제품과 동물성 기름 및 지방이 포함)
수산물	· 해수, 기수, 담수에서 잡히는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해면동물, 해삼 및 그 외 수생 생물(새끼와 알을 포함) · 냉장, 냉동 및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는 수산물가공품 포함 (관상용 어종 제외)
과일 및 채소류	·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 절단, 냉동 및 통조림으로 가공된 과일과 채소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됨
신선란	· 식용 계란 (SFA 승인 농장에서만 수출 가능)
가공란	· 염지란, 계란분말, 액상란, 삶은 계란 및 오믈렛 형태로 조리된 계란 포함 (SFA 승인 제조시설에서만 수출 가능)
가공식품	·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과 보조 식품 포함 · 예시: 와인, 유제품, 비스킷, 식용유, 음료수, 견과류
식기류	· 식품 및 음료와 접촉하며 작동 시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품목 · 예시: 그릇, 컵, 접시, 팬, 냄비, 물병 및 젓가락, 포크, 숟가락 등

3. 인증 절차

사전 요건 – 싱가포르 식품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싱가포르에서 사업 수행 전 법인을 회계기업청(ACRA)에 등록
- 식품을 수출입, 환적 하려는 경우 싱가포르 세관에 UEN(사업자등록번호)을 등록 후 활성
- 수수료 및 허가 비용 등을 납부하기 위한 GIRO 계정을 개설함
  (GIRO 계정이 필요한 경우: 육류 및 수산물,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신선란)

1. GoBusiness Licensing 웹사이트[2)]에 접속하여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

2. 회사 계정을 사용자 계정으로 선택 후 UEN 입력

⬇

3. Licence Application 탭에 들어가 희망하는 라이선스 취득 또는 등록 유형을 선택
(육류 및 수산물 또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출입 환적/ 가공식품 및 식기류 등록)

⬇

4. 하단의 확인란을 클릭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

⬇

5. 신청인의 정보, 주소, 기업 연락처 및 메일 주소를 지정

⬇

6. 신청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입 확인 후에 General 하단 박스에 체크 및 결제란 체크
(가공식품 및 식기류 수입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므로 제출란 체크)

⬇

7. SFA에 GIRO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GIRO 계좌를 통해 지불하거나
GIRO 계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나 eNETS에서 결제

⬇

8. 예상 소요일은 평균 1~2영업일이며, 승인 공지가 메일로 송부됨. 승인 후에는 라이선스 사본을 발급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부여된 SFA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SFA와 GoBusiness Licensing 확인 결과 라이선스 취득 및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2) https://licence1.business.gov.sg/web/frontier/home

5. 취득 비용

구분	비용
육류 및 수산물	· 연간 84싱가포르 달러 · Express 서비스: 당일 처리 가능하나 추가 비용 지불 필요
과일 및 채소류	· 연간 378싱가포르 달러 · Express 서비스: 당일 처리 가능하나 추가 비용 지불 필요
신선란	· 무료
가공식품 및 식기류	· 무료

6. 품목별 조건

구분	준비 사항
육류 및 수산물	육류 – 한국산 육류는 열처리한 돼지고기, 가금류 및 캔가공한 돼지고기, 가금류 수출 가능 (SFA 승인 국가 및 시설만 가능)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건강 증명서의 발급(일반적으로 약 20싱가포르 달러)이 요구되며 SFA의 수의학 조건을 충족해야 함 수산물 – 일반적으로 건강 증명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국가 및 지역 제품 수출 가능 – 단, 고위험 품목(굴, 게 포함) 및 멸종위기 종 예외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과일 및 채소류	– 신선 농산물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 물질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선란	– 식품 등록 필요(생산 업체는 SFA에 수출 의향서를 제출, SFA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지 실사를 거친 생산 업체에 인증서 발급) – 식용란 수출 가능(SFA 승인 국가 및 시설만 가능)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사를 위해 최소 검사 하루 전 오후 12시 이전에 창이 동물 및 식물 검역소(CAPQ)에서 검사를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 필요
가공식품	– 가공식품은 수출국 식품 당국의 감독하에 제조되어야 함. 일부 품목은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선란	– 식용 계란(SFA 승인 농장에서만 수출 가능)

7. 인증 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 홈페이지: www.sfa.gov.sg
– 전화번호: +65-6805-2871

싱가포르 WAREES(MUIS) 할랄 인증(선택)

1. 개요

싱가포르는 젊은 무슬림 층의 비율이 높고 무슬림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비이슬람 국가로서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함

싱가포르 할랄 인증기관(MUIS)은 싱가포르의 유일한 할랄인증 기관이며 세계 3대 할랄인증 기관 중 하나로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가 강점임

할랄 품질 경영 시스템 (HalMQ)에 초점을 맞추어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고 MUIS 할랄 인증 마크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안 이슬람국가와 걸프 협력회의 (GCC) 국가의 교차인증을 통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2. 대상 품목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개 유형의 할랄 인증이 발급됨
- 레스토랑, 푸드코트 등 식당
- 해외 할랄 인증을 받은 외국산 수입·수출품
- 주방 등의 음식 조리 공간
- 도축장
-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
- 제조시설
- 창고 및 보관시설

3. 인증 절차

1. MUIS 할랄 인증 요청을 위해 이메일(info@muis.gov.sg), 전화(+65-6359-1199)로 문의하거나 MUIS 시설 방문(Braddell Road 273)을 통해 사전 준비

↓

2. Muis eHalal System(MeS)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3)]
신규 지원일 경우 지원 비용이 청구됨

↓

3. 신청한 지원서가 이슬람 할랄 인증 조건(Muis Halal Certification Terms & Conditions)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할랄인증 검사가 수행됨

↓

4. 인증서가 발급 및 발급 수수료 청구

↓

5. 주기적인 불시 검사를 통해 인증 조건 및 상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함. 업체는 제품, 원재료, 무슬림 직원 현황 등에 대해 변동 사항 발생 시 MeS(Muis eHalal System)를 통해 보고해야 함

↓

6. 할랄 인증 소지자는 인증 만료 3달 전부터 늦어도 만료 1달 전까지는 인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제출 서류

- 제품/메뉴 항목 및 원료의 목록
- 제품 레이블 그림(제품/전체 공장 구성표)
- 배달 차량 사진(요식업/제품/전체 공장 구성표)
- 인증을 받을 건물의 평면도
- 할랄인증, 규격 및 시험 분석 보고서와 생산 원료의 할랄인증 사본
- 무슬림 직원(할랄 팀)이 승인한 모든 원료의 구매송장 및 배달 주문서
- 할랄팀 구성원의 임명장 또는 공고장
- 할랄팀 관리 회의록
- 무슬림 직원과 할랄팀 구성원 한명의 할랄 교육인증서
- 제품 생산과정 제조공정도
- Halal Assurance Points(HAP)s의 목록과 허용한계 및 처방지침
- 각 HAP에 대한 승인 모니터링 절차 및 기록
- 각 HAP에 대한 승인 시정조치 절차 및 기록
- 내부 감사 보고서 할랄 시스템 변화에 대한 기록
- 무슬림 직원 2명의 고용증명서

3) ehalal.muis.gov.sg

5. 할랄 인증 소요 기간 및 비용

소요 기간: 업체별 사전 준비 정도, 할랄 인증 기준 부합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주로 약 2~3개월 정도 소요됨

비용: 비용은 처리 희망 속도와 발급 종류에 따라 산정되며 크게 신청비용, 발급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뉨
- 신청 비용: 일반접수 시 170싱가포르 달러(세금 포함), 급행접수 시 364싱가포르 달러(세금 포함)
- 발급 비용: 대상에 따라 60~2,100싱가포르 달러 사이(세금 포함)
- 기타 비용: 심사단의 현장실사 비용

6. Warees Halal

MUIS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Warees Halal의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야 함 Warees Halal은 MUIS 산하 비영리기관임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에 위치한 시설 및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Warees Halal을 통해 할랄 인증 신청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Warees Halal 및 한국 icc인증원을 통해 진행함. Warees Halal은 MUIS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한국 업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한국 IIC인증원(International Industrial Certification)을 한국 대표 에이전시로 지정해 협업하고 있음

1. 한국 ICC인증원에 문의 및 사전심사 신청

⬇

2. 공장 방문, 서류 검토(공장등록증, ISO 인증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등), 제품 시험 의뢰 등 사전심사 진행

⬇

3. 사전심사 합격 시 Warees Halal에 신청 서류 제출

⬇

4. Warees Halal로부터 서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심사비 지불 및 심사 일정 협의

⬇

5. Warees Halal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 심사 진행

⬇

6. 심사 결과 승인 시 Warees-MUIS 할랄 인증이 발급됨

7. 인증 기관

(1) MUIS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싱가포르 유일의 할랄 인증기관이며 할랄 인증 뿐만 아니라 모스크 개발 및 관리, 파트와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홈페이지: www.muis.gov.sg
- 전화번호: +65 6359 1199
- 이메일: info@muis.gov.sg

(2) Warees Halal

MUIS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싱가포르 내 현장실사, 할랄 관련 교육, 싱가포르 외 할랄 인증 업무를 수행함

- 홈페이지: wareeshalal.sg
- 전화번호: +65 6291 2702
- 이메일: info@wareeshalal.sg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선택)

1. 개요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함

2. 대상 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HACCP은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안전 관리 인증기준으로 수산물, 축산물, 식품업체 가공업이 대상이며, GAP은 식용 가능한 농산물이 대상임. 적용 대상이 식용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 GAP과는 차이가 있음

3. 인증 절차

1.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와 기본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계획서를 구비하여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함

↓

2. 인증기관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심사대상 선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일정을 통보함

↓

3. 인증심사원은 접수 후 42일 이내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이력 추적 관리 여부 등의 사항들을 서류 및 현지방문하여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함

↓

4. 인증 기관은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 농가에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부적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보함

↓

5. 인증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 과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함

<신청 시기>

신청 대상 농산물이 인증 기준에 따라 생육 중인 농산물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 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 계획 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인 시기에 신청

4. 제출 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유의 및 준수사항
  - 팀 구성원이 농산물우수관리(GA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생산계획 및 이용할 수확 후 관리시설을 기재함
  - 품목별 재배작기는 생육중인 농산물과 생육계획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기재함
  -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위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여야 함
  -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따라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함
  -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점검 담당자가 설정된 한계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함
  - 점검 방법은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적절하게 문서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5. 취득 비용

GA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 + 심사원 출장비 +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비를 인증신청서 접수 시 납부

항목	수수료(원)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심사원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 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함
- 일비·식비·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식비·숙박비를 징수함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서 접수 시 현금 또는 지로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심사원 출장비는 신청자에게 반환함
  - 출장 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되, 건당 농가 수가 많아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 적용. 출장 인원은 2인 이하로 함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함
(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

6. 인증 기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민간 인증 기관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함

7.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

① 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인증농산물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지 정지를 할 수 있음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	–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전업, 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취소	–	–

행정처분

①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1조제1항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음

②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9조)
-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0조)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선택)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위생관리체계임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4]에서 진행하며, 아래 절차 등은 동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함

HACCP은 크게 식품, 축산물, 사료공장 분야로 나뉘며, 식품에 식품 제조·가공업이 포함됨. EU는 공통 식품 위생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5조[5]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모든 식품제조업체는 HACCP의 원칙에 따라 제품 및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haccp.or.kr/
5) (EC) No. 852/2004 제 5조 HACC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4R0852-20210324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3. 인증 절차[6)]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6)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5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사본
- 영업신고필증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6. 의무 적용 대상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03 라벨링

표 11 싱가포르 라벨링

라벨 필수 표시사항 및 기준	표기 언어	– 영어로 표기해야 함 – 영어로 표기된 정보와 어긋나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병기 가능함
	식품명	– 소비자에게 식품의 실제 특징을 알려주기 위하여 식품의 일반적인 이름, 적절하거나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설명을 라벨에 명시해야 함 – 브랜드 이름, 상표 이름, 복잡한 이름, 판매 이름, 또는 영어가 아닌 이름은 위의 상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음
	원재료명	– 식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표기해야 함. 즉, 가장 먼저 나열된 성분은 식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성분명은 일반적인 이름 또는 설명이 아니라 특징적인 이름 또는 설명을 의미하며, 성분의 정확한 특성을 잠재 구매자에게 알려야 함 – 식품에 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필요는 없음 –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구성 성분의 적절한 명칭을 나타내야 함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contain(포함함)'이라는 설명을 이용하여 제품의 라벨에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아스파탐을 함유하는 제품은 '페닐케톤뇨제: 페닐알라닌을 함유함(PHENYLKETONURICS: CONTAINS PHENYLALANINE)'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경고를 명시해야 함
	순중량	– 일반적으로 제품의 순중량은 절댓값으로 표시해야 하며, 값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액체 식품의 경우에는 밀리리터(mL) 또는 리터(L)를 이용한 부피, 고형 식품의 경우에는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이용한 무게,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에는 무게 또는 부피, 그리고 통조림과 같이 액체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순중량 및 배출된 식품의 중량도 표기해야 함
	원산지	– 수입 식품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원산지와 함께 수출국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등과 같은 식품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또한 라벨에 표기해야 함

자료: Singapore Food Agency

라벨 필수 표시사항 및 기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 수입 식품의 경우, 현지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라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이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품 리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라벨 선택 표시사항 및 기준	유통기한	– 식품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의 설정 및 개봉되지 않은 식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유통기한 표시는 부패하기 쉽거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제품, 오염되기 쉬운 제품, 유아용 식품 등 특정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 – 'Use by', 'Expiry date', 'Best before' 또는 'Sell by'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최소 3mm 이상의 글씨로 영구적으로 표시되거나 양각되어야 함 – 식품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특정한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명확한 보관 조건을 명시해야 함
	영양 정보 패널	– 영양 또는 건강 강조 표시를 포함한 제품인 경우에만 필수임 – 영양 정보 패널은 소비자에게 100g(액체 식품의 경우에는 100mL) 또는 제품 1회 제공량당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1회 제공량'과 '패키지당 제공량'은 영양소가 1회 기준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요구됨 – 열량(kcal, KJ, 또는 둘 다), 단백질(g), 지방(g), 탄수화물(g), 영양 강조 표시 또는 건강 강조 표시의 대상이 되는 영양소(g)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소금, 나트륨, 칼륨 또는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에 대한 영양 강조 표시를 포함하며, 그 외 다른 영양소에 대한 영양 강조 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나트륨 및 칼륨 이외의 에너지 또는 영양소에 대한 언급은 패널에서 생략할 수 있음
	추천 사용방법	– '레시피(Recipe)' 또는 '추천 사용방법(Serving Suggestion)'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사전 포장제품의 조리법, 사용방법, 그림 설명 등을 라벨에 포함할 수 있음 – 제품이 특정 식품 성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 설명은 제품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영양 강조 표시 및 건강 강조 표시	– 식품에 대한 모든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는 반드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검증 가능해야 함 – 영양 강조 표시는 '고섬유질', '저지방', '무설탕' 등과 같이 식품에 영양적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건강 강조 표시는 식품의 소비와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나타냄 –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는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 – 음식을 섭취할 경우, 질병이나 건강 관련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감소함을 설명하는 질병 위험 감소 강조 표시 – 식품 구성성분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는 기타 기능 강조 표시

자료: Singapore Food Agency

일반 사항	라벨링 관련 일반사항	– 라벨은 모든 식품의 패키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읽기 쉽도록 안전하게 부착해야 함 – 스티커 라벨이 제품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다른 필수 정보를 가리지 않는다면 허용됨 – 스티커 라벨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라벨과 다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것은 금지됨 – 식품 기업이 식품 라벨 및 광고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식품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식품청에서는 식품 라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정된 4개 기관에서 사전 검토가 가능하며 비용은 제공 서비스에 따라 상이함
	제품 광고에 금지되는 사항	– 일반 가공식품에 제품의 성질, 안전성, 품질, 순도, 중량, 원산지 등을 나타내기 위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라벨과 광고에 허용되지 않음 – 치료 또는 예방 조치를 위한 사용, 한 사람의 의학적 조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상태를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식품 섭취로 건강이나 신체 상태가 개선된다는 내용은 금지됨

자료: Singapore Food Agency

04 위생요건

식품 첨가물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첨가물을 특정한 기술상의 기능을 위하여 식품에 의도적으로 추가되는 화학적 물질이라고 설명함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포함된 첨가물은 반드시 사용 전에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식품첨가물의 싱가포르 식품 규제인 식품판매법(Sale of Food Act)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KATI에서 기타 가공품의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총 34건의 물질과 관련 기준이 검색됨
- 하기 표는 기타 가공품에 적용되는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기준 중 일부이며, 더욱 자세한 식품첨가물 규정은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접속하여 '식품첨가물/유해물질 > 싱가포르 > 식품 유형 > 기타 식품류 > 기타 가공품'을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2 기타 가공품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물질명	식품 유형	사용기준
Calcium L-methylfolate	모든 식품	(엽산 영양 보충제로 사용할 경우) / GMP; 효능을 발휘하는 최저 용량
Lindane	모든 식품	Codex EMRLs(Extraneous MRL) 적용
menaquinone (vitamin k2)	모든 식품	(비타민 K2 영양 보충제로 사용할 경우) / GMP; 효능을 발휘하는 최저 용량
phylloquinone	모든 식품	(비타민 K1 영양 보충제로 사용할 경우) / GMP; 효능을 발휘하는 최저 용량
Partially hydrolysed lecithin	모든 식품	사용금지
PHOSPHATES	모든 식품	GMP; 효능을 발휘하는 최저 용량
sodium propyl para-hydroxybenzoate	모든 식품	사용금지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유해물질

표 13 기타 가공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

물질명	식품 유형	잔류허용기준	분류
Aldrin & Dieldrin	모든 식품	Codex EMRLs(Extraneous MRL) 적용	P
Antimon(y) (Sb)	모든 식품	1ppm	O
DDT, DDT metabolites	모든 식품	Codex EMRLs(Extraneous MRL) 적용	P
Dieldrin	모든 식품	Codex EMRLs(Extraneous MRL) 적용	P
Endrin	모든 식품	Codex EMRLs(Extraneous MRL) 적용	P
heptachlor	모든 식품	Codex EMRLs(Extraneous MRL) 적용	P
Tin (Sn)	모든 식품	250ppm	O
Patulin	모든 식품	50ppb	O
melamine	모든 식품	2.5ppm	O
Antibiotic Residues or degradation products	모든 식품	불가	V
Mineral Hydrocarbons	모든 식품	씹는 음식의 중량을 100이라 할 때 잔류한 고체형태의 미네랄 하이드로카본의 중량이 60을 넘지 않거나 아예 없어야 함. 미네랄 하이드로카본이 식품의 겉 표면에 윤활제로 사용되었을 경우, 만약 그 부분이 조리 과정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 잔류한 미네랄 하이드로카본의 중량은 식품의 전체 중량의 0.2를 넘지 않아야 한다.	O
Cadmium (Cd)	모든 식품	0.2ppm	H
Aflatoxin (aflatoxin B1, B2, G1, G2(total))	모든 식품	5ppb	O
Aflatoxin B1	모든 식품	5ppb	O
Mercury (Hg)	모든 식품	0.05ppm	H

*유해 물질 분류

농약(P): Pesticide / 동물용의약품(V): Veterinary medicine / 중금속(H): Heavy metal / 기타(O): Others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V

시사점

01 수출 확대 방안

시장 여건

2021년 싱가포르 비(非)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 5.1% 성장을 기록하여, 싱가포르의 약초 및 비(非)약초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 가능성 진단 및 전략

국내의 경우에도 콜라겐 제품은 주로 미용, 즉 피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며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동안이며 피부가 좋은 여배우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있음. 가능하면 싱가포르에서도 미와 피부 탄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싱가포르의 민족적 구성(화교)을 고려했을 때, 패키지의 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실제 중화권에서 붉은색을 선호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디자인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녹색의 경우 1) 정의로움, 2) 비천함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으므로 사용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함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입소문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따라서 제품에 대한 모니터 요원, 블로거,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의 구매 경험 및 후기 공유가 제품의 시장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임

홍삼 스틱과 마찬가지로 2021년 기준 싱가포르의 건강보조식품이 드럭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63.6%를 차지하므로, 해당 유통채널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싱가포르의 건강보조식품 온라인 유통 비중은 현재 5%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온라인 쇼핑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요 소비층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라인 쇼핑몰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해야 함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 Euromonitor International
2. ITC World Trademap
3. 농식품수출정보(KATI)
4. Guardian
5. Statista
6. SmilarWeb
7. EcommerceDB
8. Singapore Food Agency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 행 일 자 2022. 12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pyright 2022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